

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

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위반자에게 「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제34조,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주소불명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4. 1. 12.

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



- 1. 건명: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
- 2. 근거: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4조, 제35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, 행정절차법 제14조
- 3. 송달 대상 및 내용

대상자성명(생년월일)	처분내용	대상자격직종	처분근거	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
허○행('62. 10. 9.)	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자격취소	기계가공 3급 (1983000602호)	법 제34조, 제35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	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
노○용('57. 8. 12.)		기계가공 3급 (1985000067호, 1979001122호)		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 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- 4. 공고 기간: 2024. 1. 12.~2024. 1. 26.(14일간)
- 5. 기타 문의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김태은주무관(043-460-497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